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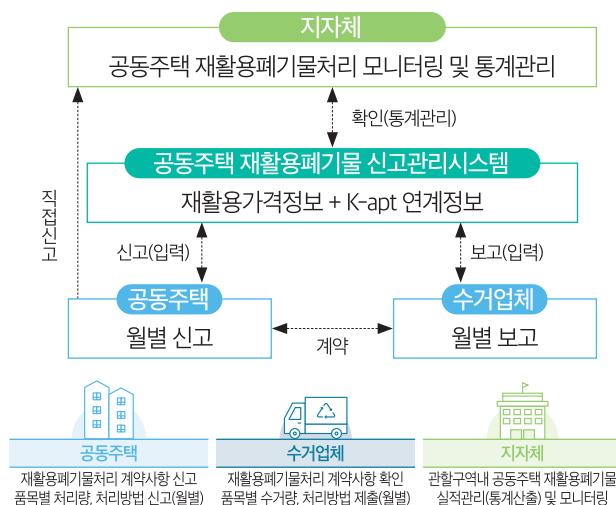
● 시스템 개요

-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 이후, 법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신고 의무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신고 품목

- 공동주택 분리배출 품목(11종)
 - ▶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고철류, PET병, 발포수지, 폐비닐
플라스틱, 폐의류, 소형가전, 기타

• 시스템체계도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시스템 안내

홈페이지: www.re.or.kr(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전화번호: 032)590-4270/4

팩스: 0505-822-7800

법률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제68조(2020.11.27. 개정시행)

(제15조 제3항)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 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 제1항 제1의2호)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2018.8.7. 배포)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

(민간수거업체)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서,
공동주택과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

2020. 11. 27. 일부터
공동주택 등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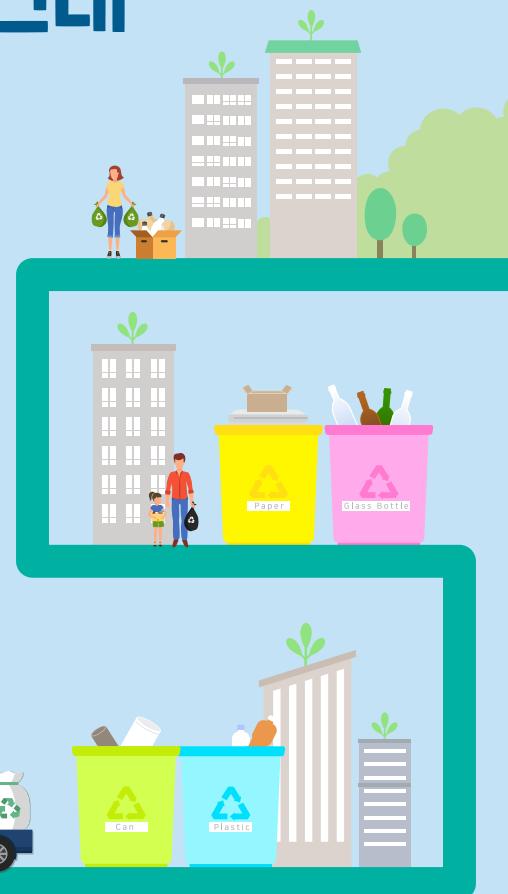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처리 신고자를 위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

사용안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